

<2024.04.16. 개정>

학생생활규정



1. 총 칙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4.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년장 선거 규정
5. 학생회 운영 규정
6. 학생 용의·복장 규정
7. 학생 표창 규정
8. 삭제
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1. 총 칙

- 2011. 6. 1. 제정 ◦ 2012. 3. 1. 1차개정
 - 2014. 4. 23. 2차개정 ◦ 2022. 2. 23. 3차개정
 - 2023. 10. 5. 4차개정 ◦ 2024. 4. 16. 5차개정
-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이 기존 규정과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제1장(총칙), 제2장(생활지도의 범위),
제3장(생활지도의 방식)이 우선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이 규정은 ‘청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인권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 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 6 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학생지도의 방식

제 7 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IV. 학생생활규정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교과교사가 지정)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과교사가 지정)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 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2호 중 수업교사의 판단 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수업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판단해 복귀시기를 결정)	해당 좌석 및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 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수업종료 후 전 화로 통지하고 부재시 문자로 통지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3호 지도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 이 없는 경우	교원업무지원실 등 교감이 지정하는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수업교사가 교감(장)에게 인계 요청 후 교감(장)은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 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점심시간 내 20분内外)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부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담임)교사가 생활안전부 생활지도담당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인계 ·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수업종료후 전화로 통지하고 부재시 문자로 통지함. 	자기 변론서 및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기준 시종 후 10분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우선 교감이 지도하고 교감의 부재 시 교장, 학년부 교사, 생활안전부 교사 우선순으로 지도함(출장 등 사유 발생) *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IV. 학생생활규정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 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물품의 분리를 결정한 교사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분리결정 교사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생활안전부실에서 작성, 일지의 관리는 학교장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 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생활안전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학부모에 알림(문자) : 담임교사 · 학부모의 분리물품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직접 반환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 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11 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 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12 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13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5 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④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개정】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6.)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5>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의 서식을 준용하였으며 추후 교육부 해설서에 따라 서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식 1 >

성 칠 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 호 자	※ 말씀: 성명 :	답임	생활인성교육부장
		(사인)	

< 서식 2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년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식 3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 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4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 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 (목)	2023.9.1 4. (월)	2023.9.1 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 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5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p>※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p> <p>의견</p>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6 >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직인생략)

2. 학급회(자치활동) 운영 규정

- | | |
|----------------|----|
| ◦ 2001. 7. 1. | 제정 |
| ◦ 2017. 3. 1. | 개정 |
| ◦ 2019. 8. 21. | 개정 |
| ◦ 2022. 2. 23. |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학급자치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 태도를 기르고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데 있다.

제2조【조직】학급자치회는 학년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활동 부서】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학급별로 학급자치회의 결의에 따라 1인 1역할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의 부서별 활동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예부 : 학습분위기 조성, 자율 학습 실천, 학습 자료 준비, 도서관리
2. 환경부 : 환경 미화, 화분 및 커텐 관리, 학급 비품 관리
3. 봉사부 : 절전, 폐휴지 수집 및 분리수거, 봉사 위문 활동, 청소 관리
4. 생활안전부 : 학급 생활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사항
5. 체육부 : 위생 및 양호 활동, 체육 활동
6. 총무부 : 학급 회계 관리 및 회의 운영 총괄
7. 홍보부 : 학급 활동 홍보 및 학급신문 제작
8. 교육급식부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4조【임원의 역할】학급자치회에는 지도위원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도·자문위원 : 학급 담임 교사는 지도·자문위원으로서 학급 자치회 활동이 자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자문 역할을 한다.
2. 회장(반장, 1명) : 학급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3. 부회장(부반장, 1명) : 회장을 도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4. 서기 : 학급자치회의 내용을 기록 기록한다.
5. 부장 : 각 부의 활동을 계획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 정·부반장을 각각 겸임한다.
2. 서기와 각 부장은 정·부반장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여 학급 담임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학급 임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통솔력이 있고 학급원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임기】학급 임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급 임원이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선출한다.

제 3 장 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 개최】학급 자치회는 월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학교 사정에 따라 학급 담임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의제 발표】회장은 최소한 회의 1일 전에 의제와 토의 안건을 결정, 학급원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 설명】의제의 제안자나 기타 회원은 회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의제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기록】학급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며,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12조【회순】학급 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1. 성원 확인(서기)
2. 개회 선언(회장)
3. 국민의례(부회장)
4. 전주 회의록 낭독(서기)
5. 각부 활동 사항보고 및 반성(각부장)
6. 의제토의
 - ① 의제발표(제안 설명)
 - ② 의제토의
 - ③ 실천 사항 토의 결정
7. 기타 토의 및 건의 사항
8. 지도 조언(학급 담임)
9. 폐회 선언(회장)

제13조【사회】회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학급원들에게 발언권을 고루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발언】발언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여야 하며, 회의 목적에 맞는 발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한 뒤 이를 요약하여 '동의한다'고 명백히 발언하여야 한다. 동의는 다른 회원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며 재청이 없으면 폐기된다. 동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은 칠판에 이를 판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의, 재개의】개의, 재개의가 성립되려면 제12조의 절차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의, 재개의가 동의와 유사하

거나, 동의 개의자가 찬의를 표했을 때에는 재개의를 동의, 개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표결】표결은 재개의, 개의, 동의 순으로 하여야 하며, 표결에 부쳐진 의안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다.

제18조【일사부재리의 원칙】한 번 폐기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토론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

제19조【결의안의 처리】회장은 결의안을 명확히 발표하여야 한다. 주요 안건은 학급 대의원이 전교 대의원 회의에서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회의 운영

제20조【부서 선택】학급원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1개의 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21조【활동 계획 수립, 추진】

1. 학년초에 각 부 부장이 중심된 부서별 협의회를 통해 연간 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하며, 활동의 결과는 학급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며, 평가한다.
2. 활동 계획의 수립은 전교 학생회의 활동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제22조【학급회 활동상의 유의점】학급 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학급활동과 학급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2. 사제동행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급회의 주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연간 계획을 참고하되, 학급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진행한다.
4. 학급별로 발표회, 학급잔치, 생일잔치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① 자주적,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관련되는 내용
 - ② 소질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 ③ 발표의 형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화한다.(구술, 낭송, 합창, 독창, 연기, 연주, 응변, 연설, 토론, 만화, 연극, 퀴즈 문답, 장기 자랑 등)
 - ④ 발표 내용은 모방보다는 협동을 통한 창의적인 내용이 되도록 한다.
 - 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선배 등을 특별 초청할 수도 있다.
5. 학급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급 담임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전교 학생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회의 토의 결과나 제 문제가 학생회에 반영되고,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회를 통해 학급에 전달되어 실천되어야 한다.
6.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회 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이해 자료를 수집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상황 누가 기록에 참고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 2011. 6. 1. 제정	◦ 2012. 4. 1. 1차개정
◦ 2013. 3. 1. 2차개정	◦ 2013. 9. 4. 3차개정
◦ 2014. 4. 23. 4차개정	◦ 2015. 2. 9. 5차개정
◦ 2015. 8. 7. 6차개정	◦ 2016. 3. 1. 7차개정
◦ 2017. 3. 1. 8차개정	◦ 2019. 4. 22. 9차개정
◦ 2019. 8. 21. 10차개정	◦ 2022. 2. 23. 10차개정
◦ 2023. 4. 12. 11차개정	◦ 2024. 4. 16. 12차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 서의 권리)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거】 삭제

제3조【선도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풍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선도 심의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이 원하거나 사안에 따라 학생대표(2인)를 참석시킬 수 있다(학생대표는 학생에서 추천 된 자로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직 위반 사안 발생 시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사안이 경미하여 교직의 학교 내 봉사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생활안전교육부 교사 전원 및 해당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에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학생 표창 시 선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①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 : 학생선도사항 심의(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안전교육부 생활지도 전담교사 등)
 - ④ 삭제

⑤ 간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6.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5조【기능】 삭제

제6조【사안 설명】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7조【학교장 재심 부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사무처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간사가 작성·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장 선 도

제9조【징계 종류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기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로 하고,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퇴학처분」은 학생의 등교 정지와 동시에 퇴학한다.

제10조【징계의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생활지도계,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2. 「사회봉사」는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3. 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 ③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 ④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 ⑤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 ⑥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⑦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하게 하며 '출석 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퇴학 처분」은 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① 산업체특별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
 - ② 직업 알선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 나 항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퇴학 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기관으로 전학·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6. 제 9조에 해당한 선도 사실은 학생 선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7.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1조【징계 기준】징계의 기준은 제 18조【징계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표-1> 학생선도기준 참조

제12조【징계 심의 확정】

1.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3.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① 위원회 일시 및 장소
 - ②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③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④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됨을 고지

제13조【징계 내용 통보】

1.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②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④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IV. 학생생활규정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경감 및 가중】

1.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빛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 표창), 외부상(시규모 이상 각종 상), 특기상,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명령내용을 경감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해제】 선도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다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17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징계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학교 내 봉사

- ① 삭제
 -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 나. 상습적으로 학교(교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 다.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라.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장에 출입한자 또는 유흥장 취업자
 - 마.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 바. 교내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 사. 학교 면학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 아.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자.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0일~15일인 자
 - 차.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 카. 습관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통하여 면학기풍을 흐리게 한 자
 - 타.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자

2. 사회봉사

- ① 누적된 행위
 - 가. 학교 내 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자
 - 나. 기타 학생 선도 기준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나. 문신을 한 자
- 다. 삭제
- 라. 음주, 흡연으로 해당 학년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마.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6일 ~ 20일인 자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3. 특별교육이수

① 누적된 행위

- 가. 사회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현저히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라. 단체행동, 수업거부 및 고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 마. 교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과 지시를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 바. 음주 또는 상습 흡연으로 사회봉사 선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사.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21일 이상인 자
-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① 누적된 행위

- 가.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무단출결로 특별교육이수를 받고도 다시 무단출결이 10일 이상인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자
- 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5. 퇴학처분

① 누적된 행위

- 가. 출석정지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무단출결 21일 이상)를 감행한 자나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자
-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면학기풍 및 기타

- 가. 불온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 나. 불온 전단 및 서적을 살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살포한 자
- 다. 습관적인 본드, 부탄가스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자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 결의된 자
- 마. 무단가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학업 이수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9조【징계학생 관리】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학생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5일 이내, 1일 2시간 이내로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써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로 담임 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에서 조 종례 실시 후 귀가 조치)

3. 특별교육이수

- ①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써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①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퇴학처분은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이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또는 타교로 환경을 전환시키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이 경우는 퇴학처분 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20조【상담 및 지도】선도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 결연된 학생은 상담 지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1조【학부모 지도】

- 1. 선도 처리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2.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해 생활안전교육부에 제출한다.

제22조【학급담임지도】

1.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 해당학년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확인을 받는다.
2. 요선도 학생의 학급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가정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향시 선도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유보】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4조【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입학 및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제기】

1.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이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2.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는 1회로 제한 한다.
3.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27조【재심청구】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알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알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2011. 5.3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4)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23)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9)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7)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2)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1)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2.)

제1조【시행일자】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6.)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표-1> 학생 선도 기준

<표-1> 학생 선도 기준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 봉사 (5일 이내)	사회 봉사 (5일 이내)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출석 정지 (10일 이내)	퇴학 처분
▶ 기본생활습관							
	1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2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 준 법							
기 본 생 활 습 관 · 준 법 · 공 공 기 물 관 리	3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9	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순한 태도를 취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2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3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4	학교 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5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6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7	경찰에 연행 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8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9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0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1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							
	22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3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4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5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6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구분	항목	사 안 내 용	징계사항				
			교내 봉사 (5일 이내)	사회 봉사 (5일 이내)	특별 교육 이수 (5일 이내)	출석 정지 (10일 이내)	퇴학 처분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집 단 행 위	27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8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9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0	불법 동아리 조직하거나 가입한 행위 또는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1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수업 학습 방해, 정기고사 부정행위(해당과목을 0점 처리 원칙)							
수 업 및 시 험	32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학습을 심히 방해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3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4	정기고사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5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6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흡연, 음주, 약물							
음 주 약 물	37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8	마약류를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9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퇴폐 행위							
퇴 폐 행 위 · 정보 윤 리	40	교·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1	불량 서적·저작권제를 소지하거나 본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2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3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4	원동기를 탑승하고 등학교하는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5	교외생활지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정보통신 윤리							
근 태	48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9	타인 아이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0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타인을 음해한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1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욕설, 비난의 글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 타	52	무단 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3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년장 선거 규정

◦ 2011. 6. 1. 제정
◦ 2022. 2. 23. 개정

제 1 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회 회장(2학년 1명), 부회장(1, 2학년 각 1명)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6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한다.
2.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본교의 학생은 정·부회장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1, 2학년 학생에 한해서 가진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학생회 운영위원회로 하며, 후보자 1인마다 참관인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20일 전에 공고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7조【후보자의 자격】학생회 정·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근면 성실하고 봉사심이 강한 자
2.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고,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과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학생

제8조【후보자 등록】

1.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에서 입후보하며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17:00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 서류
 -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통
 - ② 담임주천서 및 선거권자 2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 ③ 교사 3인(담임교사 제외) 추천서 1부
 - ④ 공약서 1부
 - ⑤ 서약서 1부
3.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한다.
5. 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정한다.

IV. 학생생활규정

제9조【이중 추천의 금지】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선거운동】

1.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1일 전까지로 한다.
2. 방법 : 후보자는 학급 순회 연설 등 건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당선무효 : 당선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당선 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화한다.
4. 홍보물 원고 :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벽보 내용 :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6. 벽보 :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7. 벽보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8. 벽보의 규격 : 4절지 5매 이내로 한다.
9.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판단 기회 제공을 위해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각각 1회 실시한다.
 - ①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② 연설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하되, 10분 내에서 찬조 연설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선거 홍보】 삭제

제12조【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삭제

제13조【선거 방법】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선거는 각 학년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3. 투표 당시 불참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4.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선거관리】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1. 구 성
 -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으로 된다.
 - 나. 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2. 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15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각 학년별로 설치한다.

제16조【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3.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선거 당일 1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어야 한다.

제17조【개표】

1. 개표소는 교내의 지정 장소에서 행한다.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 아래에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공고한다.
6. 투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한다.

제18조【무효 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4.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19조【당선자 결정】

1.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를 회장(2학년), 차 득표자를 부회장(2학년)으로 하며, 1학년 부회장도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동점일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 정·부회장의 당선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수여로 확정된다.

제20조【자격 상실】

1.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중에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2. 부정선거로 문제 발생 시 자동적으로 차 득표자가 당선된다.
3.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1조【보궐 선거】정·부회장 유고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해 선출하되, 기타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한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양식1>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1. 인적사항**

(사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2. 경력사항

출신학교 명	주요 경력
초등학교	
중학교	
청명고등학교 재학	

3. 출마 요지

○○○○학년도 학생회 선거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 출마 요지 -개조식으로 작성

상기 본인은 학생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와 같이 등록원서를 제출합니다.

()학년 ()반 ()번 ()장

후보자

인

보호자

인

담임교사

인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2>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자 추천서

※【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식3>

교사 추천서

1. 입후보자 인적사항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비고(출마부분)

2. 추천 교사 의견

추천 사유

○○○○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위 학생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교사 : 인

상기와 같이 학생회장(부회장) 후보 추천서를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제출합니다.

한국어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4>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실시되는 ○○○○학년도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장·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학생회 임원 후보자로서 학교의 교칙을 존중할 것이며 정해진 선거 규정을 엄정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는 당선 무효 등을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

청명고등학교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양식5>

공 약 서

1. 소 속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청명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 2 장 학년장 선거

◦ 2010. 7. 1. 제정
◦ 2022. 2. 23. 개정

제1조【설치】학년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구성】선관위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된다.

제3조【기능】선관위는 학년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1. 선거활동에 관한 사항
2.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3. 투표용지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4. 당선자 확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학년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 선전물, 정견 발표에 관한 사항

제4조【공고】학년장 선거는 학년 초 각 학년 반장, 부반장 선출 후 시행하며, 선거일 1주일 전에 공고 게시하고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입후보 등록 및 절차】생활안전교육부와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

1. 입후보 자격 : 공고일 현재 각 학년 반장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교칙위반으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학생이어야 한다.
(선관위 위원 배제)
2. 입후보 절차 : 학년장 입후보자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교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 : 입후보 등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선거운동】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정견발표는 1회로 제한한다.
2. 선관위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금지한다.
4.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 후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만 할 수 있다.
5. 후보자는 득표를 목적으로 금품, 음식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6. 선거운동은 교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 자기주도 학습시간에는 실시할 수 없다.
7. 선거 후에도 제6조(8항, 9항 제외)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고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한다.
8. 선거 벽보는 5장을 초과하지 못하며, 크기는 4절지 1/2 이내로 한다.
9.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벽보, 정견발표 원고(5분 이내) 등은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7조【투표】투표방법은 각 학년 반장, 부반장에 의한 학년별 간접선거로 한다.

1.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IV. 학생생활규정

2. 투·개표 시간은 선거일 09:00~17:00 사이에 실시한다.
3. 투표용지 교부는 선관위에서 교부하고 선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4. 투표소 설치 : 선관위는 선거 전일까지 투표소에 선관위 및 참관인 좌석,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및 기표기, 투표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개표】개표는 생활안전교육부장 및 생활안전교육부 담당교사의 참석 하에 진행한다.

1. 개표위원은 선관위원으로 한다.
2.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 처리한다.
 - 가) 경계선에 기표한 것
 - 나) 기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다)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것
 - 라)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마)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바) 선관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
3. 개표 후 투표용지는 2개월 간 보관하며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9조【당선자 결정】

1. 선출방법 : 최다득표 학생을 학년장으로 선출한다.
2. 임기 : 임기는 3월 초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3. 학급 반장 중 학년장에 선출된 경우 결원이 된 해당반 반장은 학급내에서 재 선출 한다.
4. 학년장이 학생회 회장, 부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학년장을 재선출 한다.

제10조【공표】개표가 완료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게시판을 통해 당선자를 공고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 학생회 운영 규정

◦ 2010. 7. 1.	제정
◦ 2017. 3. 1.	개정
◦ 2019. 8. 21.	개정
◦ 2022. 2. 23.	개정

제1조【명칭】이 회는 청명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이 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활동

- ① 학생회 조직, 임원선출·운영
- ② 학생생활 주요과제, 공동 관심사 계획·협의
- ③ 생활반성, 학급활동의 대한 의견 교환
- ④ 학생회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2. 위원 활동

- ① 위원회별 구체적 활동 계획 및 평가
- ② 학교생활 규칙 실천 활동
- ③ 행사운영, 봉사활동, 학생 복지의 증진 활동

3. 기타 행사활동

- ①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의식 행사 활동
- ②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③ 학교 전통 및 지역·마을공동체 문화에 관한 활동

제4조【회원】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조【권리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이 회 활동에 대한 참여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한다.
2.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을 받는다.

제6조【금지활동】 삭제

제7조【기구】이 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8조【지도·자문기구】

1. 이 회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교생활위원회를 둔다.
2.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반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제9조【효력정지】

1. 이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IV. 학생생활규정

2. 이 회의 의결 사항이 학칙에 위배될 때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10조【대의원회 구성】

1.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위원,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한다.

제11조【대의원회 기능】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건의
2.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4.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안건의 처리
5. 학교의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6.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2조【대의원회의 종류】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②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일 전까지 학교생활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학년장,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개최】

1. 운영위원회는 2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다음의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운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조직】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이 회의 사업, 기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문예 취미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부 : 학내 생활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사항
5.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6. 환경부 : 교내·외 및 내 지역의 환경 및 애향활동에 관한 사항
7. 홍보부 : 학생회 활동 홍보 및 각종 학교 활동
8. 교육급식부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 임원】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학년장 및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제18조【학생회 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4. 차장은 부장을 도와 소속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학생회 임원 선출】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한다.
2. 각 부의 부장, 차장은 대의원 총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학교생활위원회에게 추천한다.
3. 임원 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올곧으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② 통솔 능력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4. 학급 반장, 부반장 중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결원이 된 해당반 반장, 부반장은 학급 내에서 재선출 한다.

제20조【학생회 임원 임기】이 회 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명일로부터 익년 운영위원 임명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그 잔여기간 동안에 재임한다.

제21조【학생회 정·부회장선거】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 세칙에 의한다.

제22조【학교생활위원회 구성】

1. 학교생활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부 부장교사, 학생회 지도교사, 학년 학생생활지도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생활안전교육부장은 이 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4. 상임학교생활위원은 교장, 교감, 생활안전교육부장, 각 학년부장, 학생회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제23조【학교생활위원회 기능】학교생활위원회는 제반 학생회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IV. 학생생활규정

1.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전항의 지도·자문은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되며 그 운영은 학생회 상임 학교생활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제24조【학생회 재정 및 재정 관리】 삭제

제25조【학생회 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6조【학생회 선거 자격】 청명고등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학생회 선거 절차】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에 의한다.

부 칙 (2010. 7.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6. 학생 용의 . 복장 규정

- 2010. 12. 1. 제정 ◦ 2014. 4. 1. 1차개정
- 2015. 2. 9. 2차개정 ◦ 2016. 3. 1. 3차개정
- 2022. 2. 23. 4차개정

제1조【공통사항】

1. 교내에서는 항상 학교가 정한 교복, 체육복만을 단정히 입는다.
2. 교복에 교표를 지정 위치에 부착한다.
3. 교복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며, 길이와 넓이를 줄인 짧은 치마, 쪼치마, 쪼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4. 삭제
5. 학교생활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

제2조【용의 규정】

1. 용의를 단정히 해야 하며, 과도한 색조 화장을 하지 않는다.
2. 두발은 모양새가 자연스러우며 균형을 이루는 단정한 형태로 한다(염색, 퍼머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신체에 문신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제3조【복장 규정】

◆ 공통사항 ◆

1. 춘추, 하, 동복 착용기간은 당해 기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착용 방법은 규정에 의한다.
2. 바지는 일자형으로 하며 하단을 겉어서 자연스럽게 무릎까지 올라갈 정도로 한다.
3.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다.
4. 동복 착용 방법
 - 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를 착용한다.
 - 나. 무채색 계열의 목 폴라티를 착용할 수 있다.

◆ 남학생 ◆

1. 춘추복 · 동복
 - 가. 춘추복은 지정된 셔츠, 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셔츠는 단추를 채워 바지 안으로 넣어 단정히 입는다.
 - 나.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복
 -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는 바지 밖으로 내어 입는다.
 - 나. 삭제

◆ 여학생 ◆

1. 춘추복 · 동복
 - 가. 춘추복은 지정된 블라우스, 리본(넥타이), 조끼를 착용하고, 블라우스는 단추를 채워 치마 속으로 넣어 입

는다.

- 나. 스타킹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 다. 동복은 춘추복 차림에 상의(자켓)을 입는다.

2. 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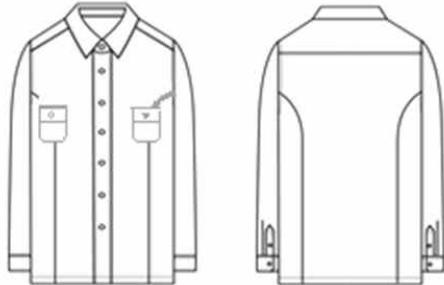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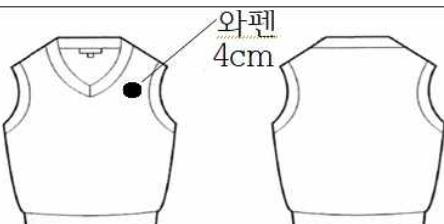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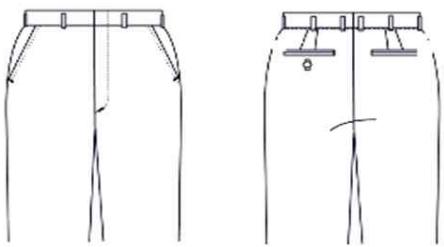
- 가. 지정된 하복(생활복)을 착용하고, 상의 끝부분이 치마 허리선 정도 내려오도록 한다.
- 나. 삭제
- 다. 스타킹 미착용 시 양말을 신는다.

제4조【가방 및 전자기기(휴대폰) 규정】

1. 삭제
2. 수업 중 전자기기(휴대폰) 사용은 제한한다.
3. 시험기간 중 전자기기(휴대폰)는 담임교사가 보관한 후 하교 시에 반환한다.

청명고등학교 교복(동복) 규정 및 디자인 사양

(남학생 교복-동복)

분류	디자인	사양서
자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진회색 디자인: 싱글 3보턴 테일러드 카라 뒷주머니 학교, 아래 인포켓 후다 소재: TW 울50%:폴리에스테르40% 젠틀라10% 학교 고유마크 부착 학교 지정단추(금장) 안감: 폴리에스테르100% <p>* 진회색 학교 지정안감</p>
셔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연한 회색 옥스퍼드 원단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양쪽 주머니 후다 앞뒤 사이바 배색: 아시밴드, 소매카푸스 안쪽 (체크배색) 소재: 폴리에스테르72%: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25%
니트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감청색(네이비) 디자인: V넥크라인 학교 고유마크 부착 소재: 울50%:폴리에스테르50% (아크릴)
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진회색 디자인: 신사 노턱 스타일바지 뒷주머니 양앞술, 한쪽 단추구멍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혼용율: 울50%:폴리에스테르40% 젠틀라10% 바지통: 7인치 이상
넥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상: 자주색줄지(스트라이프) 디자인: 기본형 넥타이 혼용율: 폴리에스테르100%

청명고등학교 교복(동복) 규정 및 디자인 사양

(남학생 교복-동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자켓		진회색	1. 디자인: 싱글 3보턴 테일러드 카라 윗주머니 학교 아래 인포켓 후다 2. 소재: TW 울50%: 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10% 3. 마크: 학교 고유마크 4. 단추: 학교 지정단추(금장) 5. 안감: 진회색 폴리에스테르100% * 진회색 학교 지정안감 必
Y 셔츠		회색 (옥스포드)	1. 디자인: 기본 와이셔츠형 양쪽 주머니 후다 .앞뒤사이바 2. 색상: 연한 회색 옥스퍼드 원단 3. 배색 : 아시밴드, 소매카푸스안쪽 (체크배색) 3. 소재: 폴리에스테르72%: 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 25%
니트조끼		감청색 (navy)	1. 디자인: V넥크라인 니트조끼 2. 마크: 학교 고유마크 부착 3. 소재: 울50%: 폴리에스테르50% (아크릴)
바지		진회색	1. 디자인: 신사 노턱 스타일바지 뒷주머니 양앞술, 한쪽 단추구멍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조절장식 2. 혼용율: 울50%: 폴리에스테르40%: 젠트라10% 3. 바지통: 7인치 이상
넥타이		자주색줄지 (strife)	디자인 : 기본형 넥타이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100%

청명고등학교 교복(동복) 규정 및 디자인 사양

(여학생 교복-동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상의		진회색	<p>1. 디자인: 싱글5보턴 라운드 노카라 윗주머니 학교, 아랫주머니 학교 인포켓</p> <p>2. 소재: TW 울50%: 폴리에스테르40% 젠틀라10%</p> <p>3. 마크: 학교 고유마크 부착</p> <p>4. 단추: 학교 지정단추(금장)</p> <p>5. 안감: 진회색 폴리에스테르100% *회색칼라 학교 지정안감 必</p>
블라우스		백색	<p>1. 디자인: 끝골림카라 기본 블라우스 앞, 뒤프린센스라인</p> <p>2. 백색 스판원단</p> <p>3. 배색: 아시밴드, 소매카푸스안쪽 곤색배색</p> <p>4. 소재: 폴리에스테르72%: 우레탄3% 비스코스레이온: 25%</p>
니트조끼		감청색 (navy)	<p>1. 디자인: V넥크라인 니트조끼</p> <p>2. 마크: 학교 고유마크 부착</p> <p>3. 소재: 올50%: 폴리에스테르50% (아크릴)</p>
앞 치마		회색+ 감청색+ 체크원단	<p>1. 디자인: 양옆 외주름 2EA씩 (전체주름 4EA)</p> <p>2. 올50%: 폴리에스테르50%</p> <p>3. 허리단 한쪽에 허리치수 조절기 부착</p> <p>4. 단추: 도포마이끼</p> <p>4. 안감: 진회색 폴리에스테르100% *진회색 칼라 학교 지정안감 必</p>
리본		자주 보라색	<p>1. 디자인 : 나비넥타이(리본형)</p> <p>2.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100%</p>

청명고등학교 교복(하복) 규정 및 디자인 사양

(남학생 교복-하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상의		백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 와이셔츠형 카라 왼쪽가슴에 주머니 2. 배색 : 소매, 주머니, 등요코 파이ipeg 아시밴드 안쪽 앞단, 안쪽 배색 (치마 체크원단) 3.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 쿨맥스 흡한속건 기능성 4. 마크: 학교 고유마크
바지		회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신사 노턱바지 뒷주머니 양쪽 잎술 한쪽 단추구멍 1EA 2. 허리단 양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부착 3. 소재: 울 60%: 폴리 에스테르 40%

청명고등학교 교복(하복) 규정 및 디자인 사양서
(여학생 교복-하복)

분류	DESIGN SKETCH	색상	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상의		백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 와이셔츠형 카라 원쪽가슴에 주머니 2. 배색 : 소매, 주머니, 등판요코 파이뻥 3. 소재: 폴리에스테르 100% 4. 마크: 학교 고유마크(35mm)
치마		감청색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앞 맞주름 전체 2EA 2. 허리단 한쪽에 허리치수 조절장식 3. 단추: 도또 마이깡 4. 소재: 율50%: 폴리에스테르40%: 젠틀라10% 5. 안감: 폴리에스테르100%

부 칙 (2010. 12.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9)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학생 표창 규정

- 2011. 6. 1. 제정
- 2015. 3. 20 1차개정
- 2022. 2. 23. 2차개정

제1조【목적】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청소년을 기른다.

제2조【표창의 종류】

1. 학업성적에 관련된 표창은 학업성적 관련규정에 의한다.
2. 개군 및 정근에 관한 표창은 학생성적 및 포상에 관한 사정규정에 의한다.
3. 행동발달 및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련되는 표창으로는 대외상 및 대내상으로 구분하고, 대내상은 당해 학년도 연간 생활지도 계획에 의거 표창의 종류를 결정한다.
4. 표창 분야 및 종류는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 ① 행동 분야
 - 가. 효행상
 - 나. 선행상
 - 다. 봉사상
 - 라. 모범상
 - ② 창의적체험활동분야
 - 가. 예술부문
 - 나. 체육부문
 - 다. 자연과학부문
 - 라. 인문사회부문
 - 마. 삭제

제3조【표창 선발 방법】각종 표창은 전 교직원 및 각 부서의 추천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조【표창 선발 기준】개인 및 학급표창, 대외상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인표창 선발기준
 - ① 행동 분야
 - 가. 효행상 : 경로 효친 사상이 투철하고,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한 학생
 - 나. 선행상 : 이웃이나 급우의 어려움을 돌보고 헌신하는 학생
 - 다. 봉사상 : 봉사심이 투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 실적이 뚜렷한 학생
 - 라. 모범상 : 성실하고 적극적인 학교 생활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 마. 공로상 : 학교 행사 진행이나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학교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학생
 - ② 창의적체험활동분야
 - 가. 예술부문 : 각종 예술 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

한 학생

나. 체육부문 : 각종 체육 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다. 자연과학부문 : 각종 기능 및 과학(수학)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라. 인문사회부문 : 각종 어학 및 인문사회분야에 학교 대표로 참가하여 전국대회 3위 이내, 도 대회 2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한 학생

마. 삭제

③ 상기 학생 중 당해년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표창한다.

2. 삭제

3. 대외상의 경우 지정된 경우 외에 해당 상의 기준에 따른 공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4. 공적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3학년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5. 각종 선도처분을 받은 자(흡연적발자 등)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상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조【표창인원】

1. 학년 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는 학년 또는 전교 재적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2. 대회의 시상은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한다.

3.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0)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 삭제

9.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2022. 2. 23. 제정
◦ 2024. 4. 16. 1차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2021.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